

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33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10월 8일

발 의 자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 남진삼, 심현정, 이은미의원

1. 제안이유

우리군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(안 제4조 관련)
- 나.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사업(안 제5조~제6조 관련)
- 다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 관련)
- 라. 업무 등의 위탁(안 제8조 관련)
- 마. 홍보 및 교육 (안 제9조 관련)
- 바. 중복지원의 제한(안 제10조 관련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불임 참조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4. 9. 19. ~ 10. 8.(20일간), 입법예고 중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4. 8. 5. ~ 8. 12. 아래표 참조.

조례안 (원안)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 청소년·청년”이란 부모가 사망·이혼·가출하거나,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·정신 및 신체의 질병,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 을 말한다.		
집행부 의견	인재육성과	9세이상 24세이하	- 지원대상 연령 범위가 광범위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구분 어려움
	복지정책과	9세이상 24세이하	- 지원대상 연령 범위 광범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목적, 방향, 방법 구분 어려움
	가족복지과	15세이상 49세이하	-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, 보호아동 등 선정하여 이미 지원 중임 -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연령으로 조정 필요
	경제과	9세이상 34세이하	- 지원대상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- 각 기본법에 따른 연령 기준 적용 * 「청소년 기본법」상 청소년 : 9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 *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 :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
검토 결과	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돌봄과 학업 및 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 으로 법정 청소년의 나이로 정하고자 함		

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가족돌봄 청소년”이란 부모가 사망·이혼·가출하거나,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·정신 및 신체의 질병,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

3.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
 4.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 5.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 등)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
2.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3.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상담 지원사업
4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
5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
6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사업
7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
8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
9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1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,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 등의 위탁)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

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 및 교육) 군수는 평창군민, 관계기관, 민간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중복지원의 제한)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6조(지원사업)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
2.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3.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 상담 지원사업
4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
5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
6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사업
7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
8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
9.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1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